

정 관

지능형컴퓨팅기술포럼 정관

제정 2017. 04. 28.

개정 2018. 07. 11.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포럼의 명칭은 지능형컴퓨팅기술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Intelligent Computing Technology Forum”으로 하며 약칭으로는 “ICTF”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포럼은 지능형컴퓨팅기술의 체계적인 표준화 전략 수립 및 추진을 통해 국제표준에 대응하여 국내표준을 선도하고, 국내 관련 산업의 생태계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업

제3조 (사업내용)

1. 본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 1) 지능형컴퓨팅기술 관련 산업에 관한 정보조사 및 연구
 - 2) 지능형컴퓨팅기술 표준의 개발 및 발굴
 - 3) 지능형컴퓨팅기술 및 표준의 보급과 이용 촉진을 위한 활동
 - 4) 지능형컴퓨팅기술 관련 산업 육성 정책 발굴 및 제안
 - 5) 컴퓨팅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타 사업
 - 6) 기타 포럼의 목적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운영위원회에 의함)되는 사업

제 3 장 회원

제4조 (회원)

1. 포럼 회원은 기관회원, 특별회원,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2. 기관회원은 법인의 대표 또는 대리인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중 운영위원으로 선정된 개인으로 한다.
4. 일반회원은 지능형컴퓨팅기술 표준화에 관심 있는 산·학·연·관에 소속된 개인으로 한다.

제5조 (가입) 포럼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 및 개인은 가입신청서([별지1])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무국인 한국컴퓨팅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제6조 (회비)

1. 회비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포럼가입 촉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는 회원의 회비 납입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권리)

1. 기관회원과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운영위원회 참여권 및 의결권
 - 2) 정관 규정에 의한 포럼의 목적 사업에 대한 참여권
 - 3) 포럼이 발행하는 연구 및 각종 자료 등에 대한 이용권
 - 4) 기타 기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써의 권리사항
2.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정관 규정에 의한 포럼의 목적 사업에 대한 참여권
 - 2) 기타 일반회원으로써의 권리사항

제8조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포럼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 3) 회비 납부의 의무
 - 4)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누설·도용 금지 의무

제9조 (탈퇴 및 제명)

1. 포럼을 탈퇴하고자하는 회원은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관회원의 담당 대리인 및 특별회원, 일반회원의 소속기관에서 퇴직, 퇴사, 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처리할 수 있다.
 - 1) 포럼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2) 포럼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 3) 회원으로서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 4 장 조직 및 임원

제10조 (조직)

1. 지능형컴퓨팅기술 표준화 활동 및 목적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2. 세부조직체계는 [별표1]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

1. 포럼은 1명의 의장과 2명 이내의 부의장 및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임원으로 둔다.
2. 임원은 비 상근직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1. 의장 및 부의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운영위원은 포럼 회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며, 운영위원 1/3 이상의 참석과 참석 인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촉 한다.
3. 분과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의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포럼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 대행 시 의장의 지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포럼 운영에 관한 제반 중요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 하여야 한다.

제 5 장 회 의

제14조 (회의의 구성)

1. 포럼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로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WG(Working Group, 작업반)을 둘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4. 분과위원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총회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16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제·개정
-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결

제17조 (운영위원회 소집)

1. 위원회는 연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2)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제1항의 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E-mail 등으로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포럼의 사업과 운영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2) 회원 제명
- 3) 회비조정의 의결에 관한 사항
- 4) 분과위원회의 개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결
- 6) 기타 포럼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19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총원의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과 사무국 운영 등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의안 등에 대해서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서면결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장은 정관 제16조에 따른 의결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총회 및 운영위원회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7. 서면으로 의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6 장 분과위원회

제20조 (분과위원회 구성)

1. 포럼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수행결과를 사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분과위원회의 소집)

1. 분과위원회는 수시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 1)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 2)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3) 분과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제1항의 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서면 또는 E-mail 등으로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2조 (분과위원회 의결방법)

1. 분과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은 개인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며 의사 결정시 기관 당 한 표의 결정권을 행사한다.
3. 분과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분과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 7 장 재정 및 사무관리

제23조 (운영재원)

포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포럼의 성립 관련 예산
- 2)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 3) 관련 기업, 단체 및 기관의 출연금
- 4) 회원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분담금
- 5) 포럼 자체의 사업추진에 의한 수익금
- 6) 외부로부터의 용역수탁 대금 등

제24조 (회계관리)

1. 포럼의 운영재원에 대한 회계 사무는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2. 사무국은 의장에게 예산지출 등의 예산운영 현황을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사무관리) 포럼 운영에 관한 사무는 사무국이 총괄 한다.

제26조 (사무국의 구성) 사무국은 한국컴퓨팅산업협회에 설치·운영한다.

제27조 (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포럼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포럼의 사무 및 각종 회의의 운영 지원
- 2) 포럼 회원 가입 및 탈퇴와 관련한 사무
- 3) 포럼 예산 및 회계와 관련한 사무
- 4) 기타 포럼 운영에 필요한 부대 사무

제 8 장 보 칙

제28조(제규정) 이 규정에 없는 사항으로서 포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정관의 효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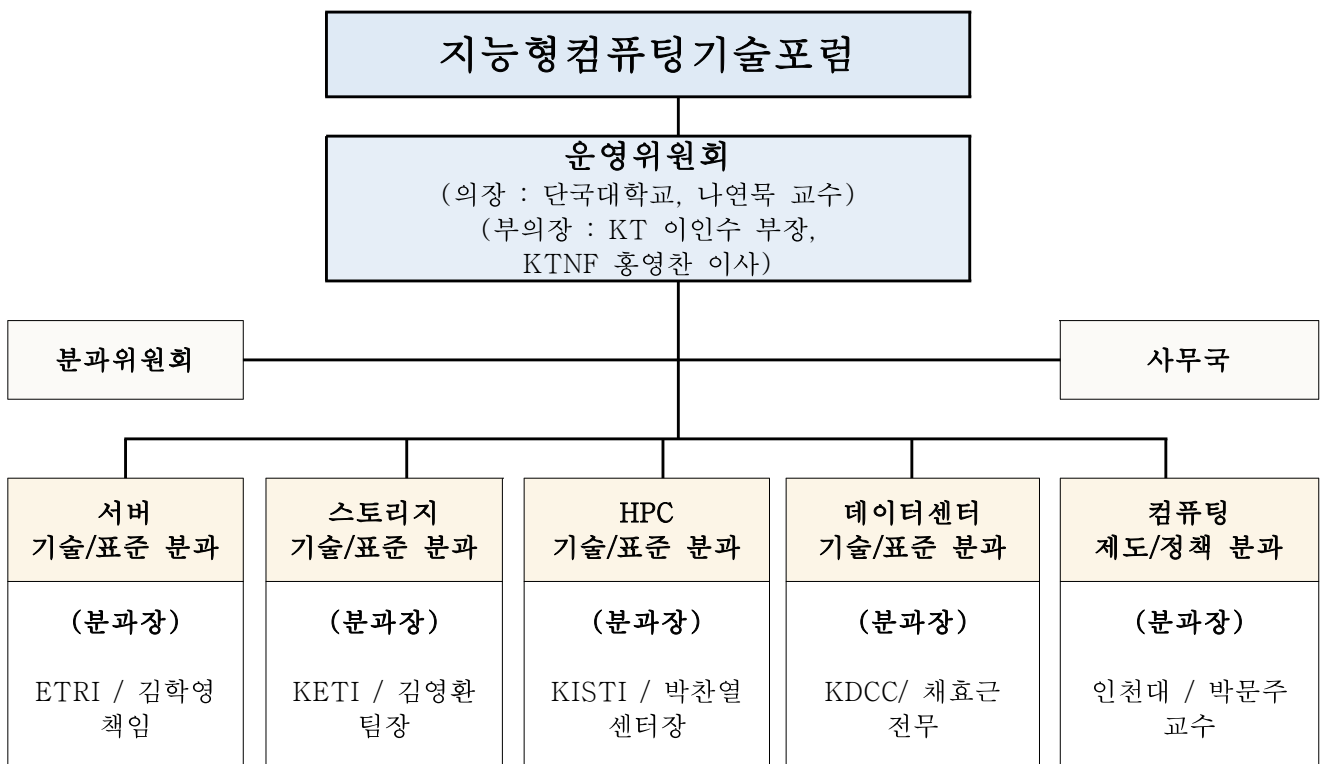
1. 이 규정은 201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2조 (표준문서 제·개정 절차) 표준문서 제·개정을 위한 업무는 별도 단체표준 개발 및 운영 요령을 따르며 동 요령의 제·개정은 협회에서 정한다.

[별표1]

○ 조직도

- (서버 기술/표준 분과위원회) 서버 관련 HW, SW 기술 및 표준 연구
- (스토리지 기술/표준 분과위원회) 스토리지 관련 HW, SW 기술 및 표준 연구
- (HPC 기술/표준 분과위원회) HPC 관련 HW, SW 기술 및 표준 연구
- (데이터센터 기술/표준 분과위원회) 데이터센터 기술 및 서비스, 표준 연구
- (컴퓨팅 제도/정책 분과위원회) 컴퓨팅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사무국) 포럼 사업 활동 지원



[별지1]

지능형컴퓨팅기술 포럼 활동 신청서

**지능형컴퓨팅기술 포럼
전문인력 풀(Pool) 등록 신청서**

본인은 지능형컴퓨팅기술 포럼(Intelligent Computing Technology Forum) 전문인력 풀(Pool)에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은 포럼 표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8. . .

성 명 : (인)

한국컴퓨팅산업협회 **귀하**
지능형컴퓨팅기술포럼

성 명			영문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기재)		성 별	
E-mail			유선전화	
			Mobile	
소속/직위				
직장주소				
활동분과	<input type="checkbox"/> 서버 기술/표준 <input type="checkbox"/> 스토리지 기술/표준 <input type="checkbox"/> HPC 기술/표준 <input type="checkbox"/> 데이터센터 기술/표준 <input type="checkbox"/> 컴퓨팅 제도/정책			
관심이슈	(포럼 활동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기술 또는 표준 이슈 등)			
학력사항	기간	최종학력		전공/학위
연구이력	기간	연구명		기관/역할
표준화활동 이력	기간	표준화명		기관/역할

※문의 :031-5182-9050 / FAX:031-5182-9054 / forum@k-cia.or.kr